

+ 사이버폭력, 함께 맞혀보아요.

- Q** 친구의 글꼴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사이버 폭력이다?
O 공개된 사이버 공간에 올린 글, 사진 등으로 상대가 명예를 잃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경우 **형법 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
- Q**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 때리는 것과 달리 상처가 남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잊힐 것이다?
X 온라인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내가 남긴 글을 지웠다고 해도 다른 곳에 남아있을 수 있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 Q** 1:1 채팅, 개인적 쪽지로 욕설을 보내는 것도 처벌될 수 있다?
O 1:1 채팅 또는 쪽지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보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 Q**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친구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사이버폭력이 아니다.
X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는 사이버폭력에 해당됩니다.



+ 사이버폭력, 이렇게 신고하세요.

- 피해 입증**
- ① 상대방 ID가 확인될 경우
게시일시, 공간, 글 내용이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
 - ② 상대방 ID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게시일시, 인터넷주소 전체, 접속IP 등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캡처

신고 방법

방문 신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 아래 사이트의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cyber.go.kr)

※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 및 피해진술, 증빙 자료 제출 등을 위해 경찰관서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earch 사이버폭력,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에듀넷 티-클리어
<사이버폭력 예방·정보윤리교육> <도란도란>
www.edunet.net / www.dorandoran.go.kr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윤리교육 자료 제공
※ 교수·학습자료, 학부모 교육자료, 학교단위 예방교육 사례



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
www.wee.go.kr
온라인 고민상담 서비스 제공(익명, 비밀)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www.cyber1388.kr
온라인 고민상담 서비스 제공(비밀상담, 실시간 채팅 등)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www.cyber.go.kr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서비스 제공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신고·상담서비스 제공



푸른나무재단
http://btf.or.kr/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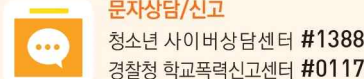


스마트쉼 센터(인터넷 중독 상담센터)
www.iapc.or.kr
인터넷 과다사용 관련 상담 제공(게시판, 메신저 등)

모바일 서비스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여 간편하게 학교폭력 상담 가능



문자상담/신고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0117



전화 신고/상담서비스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신고전화 117

사이버폭력! 더 이상 안돼! 함께 실천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

[2020년 개정판]





+ 사이버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정보통신망과 기기를 이용하여 글, 이미지, 음성 등 언어적·비언어적 형태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사이버폭력, 대표적 유형을 알아봅시다.



사이버 언어폭력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에서 욕설을 하거나 상대를 비하하고, 거짓된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사이버 갈취

사이버머니, 상품갈취형으로 주로 와이파이셔틀, 게임머니 등 사이버 상의 갈취 형태의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점차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행위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대화방, 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한 뒤 놀리고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이버금금 포함)



사이버 영상 유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나 각종 유해성 사진, 영상 등을 전송·유포하여 괴롭히는 행위

※ 이 외에도 사이버폭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이렇게 예방합니다. +

01 누구라도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도 안되지만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 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02 사이버상에서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활동합니다.

자신을 숨기며 다른 사람인 척 활동하지 않고, 익명성을 이용하여 거짓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다.

03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빠르게 유포되고 악용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04 올바른 사이버 언어습관과 사이버 예절을 익힙니다.

바른 말씨와 고운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상했다면 바로 사과합니다.

05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합니다.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사이버상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관련된 사람들에게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은 자료는 사이버상에 올려서는 안됩니다.

06 확실할 수 없는 정보나 음란물 등은 함부로 게시·유포하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 또는 사실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최초로 인터넷에 올린 사람과 유포한 사람은 모두 처벌받습니다.

07 모르는 상대의 쪽지 또는 대화신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가급적 피하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쪽지를 보내거나 대화 신청을 하는 경우 거부의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08 낯선 이와는 오프라인 만남은 피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의 관계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오프라인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주위 어른들에게 알립니다.



디지털 풋프린트(Digital Footprint)란?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의미로, 인터넷 사용자가 온라인 상에 남긴 디지털 기록들을 말합니다. 인터넷 이용 패턴, 콘텐츠 소비 이력, SNS나 이메일, 홈페이지 방문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온라인 활동 기록이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겨지게 되므로, 올바른 언어습관과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 이렇게 대처합니다. +

사이버폭력 대처하기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 선생님과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하고 학교 상담실, 전문기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요?

온라인 상에서는 더욱 명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나 강요를 하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욕설을 하는 친구에게 저도 똑같이 말해주고 싶어요!

사이버 상에서 욕설을 주고받는 등 다툼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거부의를 밝힌 후 대화방을 나갑니다.

사이버폭력으로 피해 입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화면 캡처,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파일명에 일시와 장소를 적어둡니다.

주위에 피해를 입은 친구를 목격했는데,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으로 소외되거나 피해를 당하는 학생의 심정을 헤아려보고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합니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추가 정보는 '도란도란'을 참고하세요.
www.dorandoran.go.kr